

---

# 「국기술자격 검정업무용 디지털 고속 인쇄기 구매」 규격서

---

2024. 02.



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

## 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·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절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 의무, ▲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기타사항 >
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 2018.8.31.)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·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##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용 디지털 고속 인쇄기 구매
- 사업금액 : 금44,874,500원(금사천사백팔십칠만사천오백원)/VAT 포함
- 납품기한 :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추진배경 및 목적
  - 보유 중인 노후화 고속 인쇄기의 교체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시 안정적 발간 지원, 업무 효율 향상
- 품명 및 납품수량 : 흑백 디지털 고속 인쇄기 1대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
- 입찰참가자격
  -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(G2B)에 공고일 이전에 디지털인쇄기(세부품명번호10자리, 4510150701)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
- 납품 관련 문의
  - 담당자 : 김도현(KCA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)
  - 전 화 : 061-350-1644 / 이메일 : kodol220@kca.kr

구분		세부사양	수량
본체	인쇄방식	흑백 고속 잉크젯	1
	해상도	600dpi 이상	
	출력속도(A4/A3)	130ppm 이상(A4) / 60ppm 이상(A3)	
	용지 지원크기	최대 340×550mm 이상	
	메모리	4GB 이상	
	저장장치	500GB 이상	
	제어판	LCD 터치 조작패널	
	사용전압	220V	
	무게	400kg 동등 또는 그 이하일 것	
	잉크유형	유성 안료 잉크(Black)	
	출력용지, 유연성	출력 시 켄 발생하지 않을 것, 물에 번짐현상 없을 것	
	네트워크 연결	유	
프린트	속도	130ppm 이상(A4) / 60ppm 이상(A3)	
	프린트 해상도	600dpi 이상	
피니셔	최대 스테이플 매수	100매	
	최대 중철 매수	15매(60페이지)	

※ 상기 사양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

□ 공급 및 납품에 관한 조건

- 공급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. 다만,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은 납품할 수 있다.
- 공급 물품의 보증기간 및 하자보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- 공급자는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,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 “정부 물품조달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.
-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□ 물품 설치에 관한 조건

- 공급 물품의 설치는 납품과 동시에 실시하며, 설치공간 내의 모든 PC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.
  - 납품장소 :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층 국가기술자격센터)

□ 비밀유지에 관한 조건

- 공급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내용(발간실 내부구조, 장비위치 등)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결과물을 타 업체 등 외부인에게 제공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물품 설치 시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작업장소에 출입하는 참여요원 전원에게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.